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404,438,345	42,133,150
일반회계	1,253,066,253	37,591,988
특별회계	151,372,092	4,541,163
공기업특별회계	144,664,734	4,339,942
상수도사업특별회계	43,032,576	1,290,97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01,632,158	3,048,965
기타특별회계	6,707,358	201,22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189,037	65,671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1,549,397	46,482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423,204	12,696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2,149,347	64,480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22,542	676
지하수특별회계	373,831	11,21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151,214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8 조 예산안 의회 의결 이후 교부결정된 국·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, 사용 후에 의회보고로 갈음한다.(예산안 간주처리)